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토 지 정 책 과)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 나.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6. ~ 2023.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사항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의 각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이사를”을 “이사를 하거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78조제6항”을 “법 제78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략)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u>이사를</u>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u>법 제78조제6항</u>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② (생략)	<u>가계지출비로 적용하여 산정한</u> <u>다.</u>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사를 하거나 공익사업시행지</u> <u>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u> <u>장소로 이사를</u> ----- -----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 상) ①<u>법 제78조제7항</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